

## 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번 호	11
-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□ 개정이유

- 수영장이 없는 청주북부지역과 충주지역의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청주, 충주수영장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

### □ 주요골자

- 현행 충청북도수영장이외에 청주, 충주수영장을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수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영장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수영장중에서 실내수영장은 선수훈련용으로, 실외수영장은 학생 및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원칙을 삭제함(안 제6조).

### □ 개정근거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(법률 제4,951호, 1995. 7.26.)
-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(법률 제4,689호, 1993.12.31.)

### □ 조례안 : 덧붙임

### □ 참고사항 : 덧붙임

- 신·구 조문 대비표
- 관계법령 발췌서
- 수영장 교육기관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(교육부)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문서 사본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공문서 사본

## 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'충청북도수영장(이하 '수영장'이라한다)'을 '수영장'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수영장의 명칭 및 위치는 【별표】와 같다

제4조제1항중 '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한다'를 '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'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【별 표】 수영장의 명칭 및 위치

수영장명	위치
충청북도수영장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번지
청주수영장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
충주수영장	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-1번지